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10.19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10.07. 염운주 의원외 12인
- 나. 회부일자 : 2009.10.07.
- 다. 상정일자 :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9.10.19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홍은희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2조제2항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본 개정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6항에 따라 마포구에 있는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교육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